

# 물품구매사양서

□ 전 명 : 캡·프리폼 저장용 비닐백

□ 적용범위

- 본 사양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캡 저장용 비닐백과 프리폼 저장용 비닐백 구매에 적용합니다.
- 본 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를 의해서 적용합니다.

□ 납품자는 다음 사양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품질규격

| 항 목  |    | 품질규격(가설정)                                                                                                                                                     |              |
|------|----|---------------------------------------------------------------------------------------------------------------------------------------------------------------|--------------|
|      |    | 캡 저장용 비닐백                                                                                                                                                     | 프리폼 저장용 비닐백  |
| 재 질  |    | PE(Polyethylene)                                                                                                                                              |              |
| 색 상  |    | 무색(투명)                                                                                                                                                        |              |
| 냄 새  |    | 무취                                                                                                                                                            |              |
| 두 께  |    | 0.04mm 이상                                                                                                                                                     |              |
| 크기   | 가로 | 1,100 ± 20mm                                                                                                                                                  | 2,300 ± 20mm |
|      | 세로 | 1,000 ± 20mm                                                                                                                                                  | 2,000 ± 20mm |
| 인장강도 |    | 300kgf/cm <sup>2</sup> 이상                                                                                                                                     |              |
| 외관   |    | 내·외부 이물 혼입이 없을 것                                                                                                                                              |              |
| 접합상태 |    | 하단 실링처리 후 밀봉 유지                                                                                                                                               |              |
| 용출규격 |    | · 납 : 1 mg/L 이하<br>·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mg/L 이하<br>· 총용출량 : 30 mg/L 이하<br>(다만, 사용온도가 100℃ 이하로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50 이하)<br>· 1-헥센 : 3 mg/L 이하<br>· 1-옥텐 : 15 mg/L 이하 |              |

2) 기타사항

- 식품위생법 및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자재 납품 시 생산 Lot별 품질검사 성적서(품질규격 항목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파레트 단위 Lot관리도 이루어져야하며 나무파레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공장 원부자재창고입니다.

□ 검사방법

-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규격은 발주처의 자가품질검사규격을 우선하고 검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합니다.

□ 기타 본 구매사양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납품 후 자재의 품질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캡 및 프리폼 저장용 비닐백』 물 품 제 조·구 매 계 약 특 수 조 건

2022. 3.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개 발 공 사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캡 및 프리폼 저장용 비닐백」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란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개발공사 회계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물품공급 감독,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검수, 지체상금부과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한다.(그 위임을 받은 개발공사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개발공사 품질규격대로 제조 및 납품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현장점검”이란 계약담당자가 제조현장, 물품보관장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공사 점검 기준에 따라 품질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6. “단가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내용)** ①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의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정량으로 실제 납품은 개발공사 생산계획에 따라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증감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청구하며, 계약금액의 증감 사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조정한다.

③ 계약기간은 물품계약서, 발주물량과 납품 시기는 납품의뢰서에 따른다.

**제4조(납품의뢰서)** ① 계약기간 중 물품의 납품은 납품의뢰서에 따르며 납품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발주요청일
2. 발주수량 및 납품기한
3.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4. 그 외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개발공사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충분히 제작 납품이 가능하도록 최초 납품 의뢰서는 입고요구일 대비 14일 이전에 발급하며, 이후 납품의뢰서는 매월 납품일 7일 이전에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납품의뢰서는 월 단위 납품의뢰서, 변경 납품의뢰서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품일 7일 이전에 납품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의뢰서에 의거 요구 물량이 납품 기한 내에 입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납품 시 생산 Lot별 자가품질검사 성적서(품질규격 항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담당자 요구 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송과정 중 자재 오염방지, 쏠림현상 및 빗물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재 상단을 포함한 비닐 포장 및 밴딩 처리 후 납품하여야 하며, 외부 보관 시 이물질 등이 포장 내·외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물류업체에 운송중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송업체의 차량 내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보완토록 한 후에 물품을 적재토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제조일 및 수량, 규격 등의 내용을 명확히 표기 하여야 하며, 주의·경고 표시 등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 

|                                                  |
|--------------------------------------------------|
| Lot No. <u>19</u> <u>10</u> <u>15</u> <u>001</u> |
| 년 월 일 일련번호                                       |

⑦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청결한 플라스틱 팔레트(1100\*1100\*150)에 적재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팔레트에 의해 물품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물품 운송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에 관계되는 일체의 경비부담과 회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⑧ 납품물품은 반드시 선입·선출하여야 하며, 선입·선출 관리를 위한 기록물(보관물품 구획별 이력카드 또는 물품 수불대장 등)이 실제 물품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물품 상차와 동시에 개발공사가 운용중인 '원부자재 납품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상차완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물품의 검사·검수는 개발공사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물품구매사양서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에 계약상대자가 검사·검수 방법에 이견이 있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개발공사는 검사·검수에 대한 결과를 물품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합격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와 같이 물품의 하자로 인한 불량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1. 발주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납품된 경우
2. 납품된 물품이 오손·훼손 등 하자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3. 검사·검수 시 발견할 수 없는 품질의 하자 또는 설비적용 후 발생한 하자의 경우

**제7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은 개발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봉인한 후 보관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한 물품 중 검사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반품처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품처리 할 수 없다.

1.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 장소 부족에 의한 반품
2.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품 물품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을 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물품 중 물품규격이나 품질 등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반품이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정상품과 즉시 교환을 하여야 한다.

⑤ 반품 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담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8조(품질관리)** ①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과 수량은 개발공사 물품구매사양서 및 사업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사양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를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납품 중인 물품의 제조 공정 또는 레시피 변경이 필요할 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규격 검사 및 설비적용 테스트를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 후 납품하여야 한다.
- ⑤ 물품 보관 구역은 오염방지를 위한 보관환경 관리, 물품보호를 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취 및 이물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물품과의 혼용 보관을 금지한다.

**제9조(현장점검)** ① 현장점검은 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후 개선 사항 발생 시 추가 점검을 할 수 있다.(단, 물품 보관창고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분기별 1회 이상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발공사의 제조공장(또는 물품보관창고) 점검 요청(제조공장 위생상태, 제조과정, 직접생산여부 등)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평가 항목은 붙임 1. 원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개발공사의 제조공장(또는 물품보관창고) 현장방문에 따른 개선요구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한다.

④ 현장점검결과는 평가에 반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원부자재 사전품질검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개발공사의 일괄마감제도 채택에 따라 매월 최종 입고일은 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의 기준일로 한다.

② 대금 지급은 기준일로부터 30일내에 지급한다.

③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지연이자는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④ 대금 지급 진행에 따른 월 마감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와 마감수량, 금액, 단가 등을 서로 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2. 대금청구서(또는 입금계좌지정서)
3. 지역개발공채
4.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제11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 또는 물가변동금액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내·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종결 후 제1항에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개발공사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 등 발생 시 조치사항)** ① 계약 체결된 물품과 관련하여 납품 물품의 하자 발생 또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붙임 2. 조치사항 세부내역 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어려운 경우 생산 일정 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물품 제조·구매 계약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물품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월별 변동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조정방법은 다음(표2 참조)과 같이 적용한다

|                                                                                                                                                                                                                                                        |
|--------------------------------------------------------------------------------------------------------------------------------------------------------------------------------------------------------------------------------------------------------|
| <p>표2. 월별 변동단가 계산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락률(%) = {(당월국제가격) - [입찰당시국제가격(또는 전월국제가격)]} ÷ [입찰당시국제가격(또는 전월국제가격)] × 100</li> <li>■ 등락폭 = 등락률 × 입찰당시원료재료비(또는 전월원료재료비)</li> <li>■ 조정단가 = 입찰당시원료재료비(또는 전월원료재료비) + 등락폭 + 제반비용</li> </ul> |
|--------------------------------------------------------------------------------------------------------------------------------------------------------------------------------------------------------------------------------------------------------|

- ※ 월별변동단가에 따른 조정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등 납품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의 용어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국제가격
    - 국제시세 × 평균환율
  2. 국제시세

- 해당 월의 ‘캠로커스’ 발표자료 중 해당원료의 CFR FE ASIA 가격의 산출 평균한 가격을 의미한다.
  3. 평균환율
    - 하나은행 발표 미국 달러화의 해당월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최초고시) 환율을 의미
  4. 당월국제가격
    - 변동단가적용 해당 월의 국제가격
  5. 입찰당시국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전월의 국제가격
  6. 전월국제가격
    - ‘변동단가적용 해당월’ 전월의 국제가격
  7. 입찰당시원료재료비
    - 계약체결시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원료재료비
  8. 전월원료재료비
    - 물가변동 적용 해당월의 전월원료재료비
  9. 해당원료
    - 계약체결시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원료명
  10. 입찰가격 : 입찰당시원료재료비 + 제반비용
  11. 등락률 및 등락폭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계산하고 등락폭은 원단위이하 절사하여 계산
  12. 산출평균 및 평균환율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계산
  13. 입찰당시와 전월의 적용구분은 변동단가 적용 해당월 기준에서 가장 최근에 것을 적용한다.
- ③ 캡·프리폼 저장용 비닐백 생산시 사용되는 원료가 1종 이상일 경우 동일한 계산을 적용한다. 단, 캠로커스에 발행되는 원료로 한 한다.(LDPE, LLDPE, HDPE, PP, Metallocene 등)
- ④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당월국제가격과 입찰당시국제가격(또는 전월국제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캠로커스 발행자료 등)를 개발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붙임 1. 원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

## 원·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

업 체 명 : \_\_\_\_\_  
점검일자 :     년   월   일

| 평가 항목                                                                 |                                                                                                             | 평가 결과                                                                            | 비 고      |
|-----------------------------------------------------------------------|-------------------------------------------------------------------------------------------------------------|----------------------------------------------------------------------------------|----------|
| 일반사항                                                                  | 1. 품질, 식품안전, 환경 관련 등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
|                                                                       | 2. 제조과정, 원재료 등 변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 변경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평가가 실시되고, 개발공사에 보고되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
| 원료                                                                    | 3. 원재료의 대한 문서화된 규격이 있으며, 승인된 공급자 리스트가 존재하여 유효한가?                                                            | 적합 / 부적합                                                                         |          |
|                                                                       | 4. 효과적인 입고검사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입고 자재들의 법적/자체 규격을 준수함을 보장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                                                                       | 5. 원재료 저장구역은 다음을 만족하는가?<br>- 청결하고 외부물질 유입발생 위험이 없어야 함.<br>- 원부자재는 선입선출되며 사용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어져야 함.               | 적합 / 부적합                                                                         |          |
| 제조과정                                                                  | 6. 제조과정 및 완제품에 대해 설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 검사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
|                                                                       | 7. 검사장비는 검교정되고 성능점검이 행해지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
|                                                                       | 8. 중요공정관리점은 적절하게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샘플링 기준 및 시험절차가 유효한가?                                                           | 적합 / 부적합                                                                         |          |
|                                                                       | 9. 규격이탈 조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규격 이탈 시 알람/조치 프로세스가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
|                                                                       | 10. 방역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며 적절한 주기로 방역관리가 행해지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
| 작업자                                                                   | 11. 작업자는 다음을 만족하는가?<br>- 배치 전 품질 및 위생교육 수료하였는가?<br>- 작업 시 위생복 및 위생모 착용 및 시계, 장식구 등 착용 금지를 준수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                                                                       | 저장                                                                                                          | 12. 완제품 저장구역은 청결하고 외부물질 유입 발생 위험이 없으며, 완제품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가? (화학적 및 완제품과 격리되어 보관 등) | 적합 / 부적합 |
| 13. 완제품 저장구역내 모든 제품은 명확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며 인식가능한가? (제품명, LOT No., 생산일자 등) |                                                                                                             | 적합 / 부적합                                                                         |          |
| 출하                                                                    | 14. 완제품 출하 시 다음을 만족하고 있는가?<br>- 완제품 출하 전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하.<br>- 완제품은 선입선출되며 출하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고있음. | 적합 / 부적합                                                                         |          |
| 시정 및 예방조치                                                             | 15. 내/외부 재원으로부터의(부적합사항, 불만사항, 고객불만사항) 모든 시정/예방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

점검자 소속 :                      직위 :                      성명 :                      ㉠

입회자 소속 :                      직위 :                      성명 :                      ㉠

## 원·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보관창고)

업체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 구 분      |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세부 내용 |
|----------|-----------|-------------------------------------------------------------------------------|----------|-------|
| 보관<br>환경 | 제품<br>보호  | ① 제품의 품질 저하 또는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제품보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
|          |           | ② 보관장소 내 제품의 품질 저하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작업장 점검 Check List 등) | 적합 / 부적합 |       |
|          |           | ③ 보관장소 내 제품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조류 및 곤충류 등이 관찰되는가?                                  | 적합 / 부적합 |       |
|          | 구획<br>관리  | ④ 제품은 일정 단위(Lot)로 구획을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
|          |           | ⑤ 각 구획간의 제품 및 벽면 등 충분히 이격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최소 1m 이상 통로 확보)                        | 적합 / 부적합 |       |
| 제품<br>관리 | 보호<br>조치  | ⑥ 보관장소 내 제품의 이송, 적재 등 방법은 적합한가?                                               | 적합 / 부적합 |       |
|          |           | ⑦ 당일 입출고분을 제외한 보관제품에 덮개설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
|          |           | ⑧ 제품 외부포장에 오염이 관찰되는가? (먼지, 작동유, 조류 배설물 등)                                     | 적합 / 부적합 |       |
|          |           | ⑨ 제품 외부포장에 파손이 관찰되는가?                                                         | 적합 / 부적합 |       |
|          |           | ⑩ 부적합 제품(파손 등)의 관리가 적합한가? (별도 구역 보관, 식별표시 등)                                  | 적합 / 부적합 |       |
|          | 지게차<br>관리 | ⑪ 제품 표면과 접촉하는 지게차에 대한 오염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
| 선입선출     |           | ⑫ 제품 선입선출 및 선입선출 관리를 위한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
|          |           | ⑬ 제품의 배치도면이 작성되어 배치현황과 일치되는가?                                                 | 적합 / 부적합 |       |
| 프로세스     |           | ⑭ 제품 입·출고 및 부적합 제품에 관한 추적·회수·처리의 프로세스가 존재하며, 적합한가?                            | 적합 / 부적합 |       |
| 보안관리     |           | ⑮ 보관장소 내 제품에 대한 적합한 보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

점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입회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붙임 2. 조치사항 세부내역

| 구 분              | 발생 사항                                                                                                                                                                                                                                   |
|------------------|-----------------------------------------------------------------------------------------------------------------------------------------------------------------------------------------------------------------------------------------|
| 1. 시정요구<br>(이메일) | 가. 운송차량 위생상태 불량<br>나. 물품 외부 위생상태 불량<br>다. 이취 발생 예상 타 물품과의 혼적<br>라. 물품 Lot No. 미기입<br>마. 물품 외부(포장) 파손<br>바. 선입/선출 미이행<br>사. 물품 납품시 필요서류 내용 불일치(물품 수량, 거래명세서, 시험성적서)<br>아. 납품 요구일(D-day) + 2일 이상<br>자. 자료 제출 요구 기한 미준수<br>차.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
| 2. 주의<br>(문서)    | 가. 동일 사항 시정요구 2회<br>나. 물품 내부 파손<br>다. 샘플링 수입 검사 부적합<br>라. 설비 적용 후 발견된 품질 불량<br>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기한 미준수(구매사양서에 기술된 품목)<br>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미이행(제조공장 점검 Check List 포함)<br>사. 납품 요구일(D-day) + 3일 이상<br>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
| 3. 경고<br>(내용증명)  | 가. 동일 사항 시정요구 3회<br>나. 동일 사항 주의 2회<br>다. 납품 요구일(D-day) + 4일 이상<br>라. 설비 적용 후 발생한 품질 하자로 인한 생산 차질 또는 판매 부적합품 발생 시<br>마.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
| 4. 계약 해지         | 가. 동일 경고 3회                                                                                                                                                                                                                             |